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8 선고 2018가단525306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 당사자)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영진

담당변호사 한범석

피 고 대한민국

변론 종결 2020. 3. 31

판결선 고 2020. 4. 28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, 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(이하 통틀어 '원고들'이라 한다)에게, 30,000,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6. 15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 2018. 6. 15.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대한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3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의 선대인 B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시 경기 광주군 C 전 806평을 사정 받았는데,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되었다.

나. 이 사건 토지는 1938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, 1996. 3. 14. 피고 명의 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. 12. 18.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5, 8, 9, 10, 1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

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1996년경부터 도로부지로 무단 사용하고있으므로,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.

2) 피고

이 사건 토지는 2002년 이후 피고가 아닌 광주시가 시도로 사용 점유하고있다.

나. 이 법원의 판단

이 사건 토지가 1938. 12. 1. 지방도 D으로 경기 광주군과 수원군을 연결하는도로 부지로 최초로 편입된 사실, 그후 1981. 3. 14.부터 국도 E으로 지정되어 관리된사실, 2002. 1. 10. 국도 E 사용구간에서 폐지되어 현재는 광주시 시도 F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2002.1. 10.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,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,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관리권을 광주시장 등에게 기관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기관위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가 2013 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

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결론

그렇다면,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명재권

별지